

행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

행정예고(안) |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

먼저 고양 교육발전에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초등학교 통학구역은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9조 1항 및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따라 통학거리 1.5km 이내, 도보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16조에 따라 학급편제와 통학편의, 학생수용 여건, 학교시설 규모, 적정학급수 유지, 인근 학교의 과밀화 및 과소화 방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. 제출해주신 의견에 대해 관련법령 및 현장확인을 통한 우리교육지원청의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1. 화정 루미니 오피스텔 통학구역 조정 (미반영)

- 현장실사를 통한 해당 지역의 통학구역인 백양초와 조정을 희망하는 고양화정초의 통학환경 검토 결과, 8차선 대로 횡단 및 주유소 입구 경유, 그리고 아파트 단지 정·후문 경유에 따른 우회전 차량 등으로 고양화정초의 통학환경이 백양초보다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, 백양초 통학 시 경유하는 상업지역 또한 카페, 학원, 빵집 등으로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된다고 보기 어려움
- 고양화정초는 현재 여유교실이 없어 유입 학생의 수용이 어려운 상태로 고양화정초로의 통학구역 변경은 어려움

2. 흰돌마을 2단지 공동통학구역 설정 (미반영)

- 현장실사를 통한 해당 지역의 통학구역인 백신초와 공동통학구역을 요청한 호수초의 통학환경 검토 결과, 단독주택가를 경유하는 백신초의 통학로보다 8차선 대로를 횡단하는 호수초의 통학로가 더 안전하다 보기 어려움
- 교육의 기회균등 등의 이유로 통학구역 내 1학교를 채택하고 추가적인 공동통학구역 설정을 지양하는 상황에서 학급편제가 비슷한 두 학교의 공동통학구역 설정에는 어려움이 있음

3. 용두초 통학구역 조정 (검토미대상)

- 용두초등학교는 2022학년도부터 “제한적 공동학구제” 운영 학교로 고양시 내 주소지를 둔 취학의무 대상자는 통학구역 관계없이 전·입학이 가능하며, 관련 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

4. 지축초 및 지효초 공동통학구역 설정 (미반영)

-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확정되고, 학군 설정범위는 택지개발 시 설정된 사항으로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학구역 내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배정이 어려움
- 지축지구의 개발진행으로 향후 지축초는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로 학생수용여력의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지효초와의 공동통학구역 설정은 어려움